
서귀포예술의전당 시설 대관 운영 규정(안)

2020. 3. 9.

서귀포예술의전당 시설 대관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귀포예술의전당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서귀포예술의전당 공연장 및 전시실, 기타 시설(세미나실, 강의실, 연습실 등)의 대관 원칙을 밝히고 합리적인 대관 허가로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과 관람객의 문화적·정서적 욕구를 충족하는 공연·전시·기타 행사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의 범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관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2.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3.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4. 서귀포예술의전당 기타 시설(세미나실, 강의실, 연습실 등)

제3조(운영방침) 각 대관시설의 운영방침은 다음과 같다.

1. 대극장: 문화예술 교류 및 진흥을 위한 전문 공연장화 추진
2. 소극장: 문화예술 창작활동과 활성화를 위한 다변화 추진
3. 전시실: 순수 창작예술의 전시 및 수준 높은 전시실 운영
4. 기타시설(세미나실, 강의실, 연습실 등): 효율적인 이용

제4조(대관의 구분) ①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관예약은 우선대관, 정기대관, 수시대관으로 구분하여 예약 접수한다.

② 우선대관은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가 주최·주관하는 공연(행사), 도 및 행정시에서 운영·관리하는 예술단 정기공연을 우선으로 대관하며,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 서귀포예술의전당이 주최·주관하는 기획 및 초청 전시와 중앙 단위 사단법인 문화예술 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및 도내 공모 대전, 예술 장르별 연합전 등 제주예술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전시에 우선 대관한다.

③ 정기대관은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대관하며, 우선 대관에 속하지 않는 사전 대관으로 우선 대관기간을 제외한 공백 기간 중에 문화예술 관련단체 및 개인이 사전 대관신청에 의하여 사전 대관하는 경우로 신청자의 신청서 및 계획서를 일괄 예약신청 받아 내부 심사 후 결정 통보한다.

1. 정기대관의 예약신청 대상기간은 상·하반기로 구분한다.
2. (대관신청 접수기간) 사용자의 정기대관의 신청은 상반기 사용을 희망할 때에는 전년도 10월 중에 신청접수를 하여야 하며, 하반기 사용을 희망할 때에는 당해 연도 3월중에 신청접수를 하여야 한다. (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다.)
3. 신청서 접수기간은 10일 내외로 한다.
4. 대관의 확정통보는 접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5. 사용자가 대관을 신청할 시에는 대관신청서, 계획서, 공연·전시 경력 내용 입증자료 및 최근 공연·전시 홍보물 1부 등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수시대관은 우선대관 및 정기대관 완료 후 공백 기간이 있을 경우 30일 이전에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

제5조(대관허가의 기준) ① 정기대관은 우선대관을 제외한 예약대관으로 「서귀포예술의 전당 설치·운영조례」 제4조를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순으로 결정한다. 단, 각 항목마다 경합 시는 정기적인 행사를 우선하고 비정기적인 행사는 사용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행사를 우선으로 한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 문화예술교류 및 지방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인지도가 있는 연극, 뮤지컬, 콘서트, 전시 등)
2.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산하 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3. 일반 문화예술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4. 개인이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

② 예약신청 순위 결정 시 내부규정을 적용하고도 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대관심의위원회(관장, 전 담당, 공연기획담당자, 대관담당자, 무대감독, 공연전문가 등)를 구성하여 심사·결정한다.

③ 수시대관은 우선대관 및 정기대관을 제외한 공백 기간에 대하여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범위) 및 제7조(대관허가의 제한)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내부 심사를 거쳐 신청한 순으로 결정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범위) ① 대극장의 사용신청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 행사를 원칙적으로 하되 조례에 의한 문화예술행사의외는 대관 지양
2. 종합예술행사는 지양하고 1일 1개 장르의 공연에 한하여 대관(단, 1개의 장르가 우선이 되고 다른 장르가 찬조(협찬)출연하는 경우는 제외)
3. 일반대중예술(가요, 라이브콘서트, 쇼 등)의 공연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이외는 대관지양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도 단위 이상 문화예술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나. 출연자가 전국적인 지명도, 인기도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련기관 및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공연
4. 초·중·고교생이 출연하는 경우는 자치단체, 도 단위 이상 문화예술단체 또는 전문공연단체, 언론·방송사 및 교육청 등이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단, 학교단위 발표회는 순수예술행사에 한해 대극장 사용이 가능 하며 학예회 등 종합예술행사는 소극장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영화 상영은 공공기관 및 문화예술관련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무료 상영인 경우

② 소극장의 사용신청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창작활동을 위한 공연 및 연습
2. 문화예술 관련 행사, 강좌, 세미나 등
3. 소극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행사 대관(강연회, 세미나, 발표회 등)

③ 전시실의 사용신청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고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전시를 우선으로 미술·사진·서예·공예와 같은 순수 예술 작품에 한한다.
2. 사용기간: 개인전 및 단체전 설치 및 철수기간을 포함하여 1회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최저 사용기간은 4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개인전 신청자격의 기준은 전시경력 5회 이상으로 한다.)
3. 대관할 수 없는 전시: 다음의 전시는 대관을 불허할 수 있다.
 - 가. 18세 이하의 단체 또는 개인의 전시
 - 나. 전시실 훼손 우려가 있는 전시
 - 다. 개인전 신청자 전시경력이 4회 이하인 자
 - 라. 수석, 난, 분재 전시 등

④ 기타 시설(세미나실, 강의실, 연습실 등)의 사용신청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원칙적으로 하되, 서귀포예술의전당 공연·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사용에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용도에 맞게 대관을 허가한다.

구분	주용도	면적(㎡)	부대시설	사용료(원)	비고
세미나실	회의 및 워크숍	83.08	탁자, 의자, 마이크, 빔프로젝트	1시간 30,000	빔 사용 시 10,000원 추가
강의실	문화예술 관련 교육	100.2	탁자, 의자, 마이크	1시간 30,000	-
연습실	공연 출연자 연습	69.68	벽면거울	1시간 30,000	지하 2층

⑤ 대관 신청 시 7월~9월, 12월~2월은 공연·전시시간에

대하여 반드시 냉·난방 시설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연·전시 당일 일기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서귀포예술의전당과 협의 후 사용하지 않은 시간만큼 사용료는 반환한다.

제7조(대관허가의 제한) ①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관의 신청 및 허가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각종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서귀포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및 본 규정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시설 및 설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관리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특정 종교의 포교 및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공연·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상품의 판매 및 홍보 등 지나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7. 서귀포예술의전당의 검인을 받지 않은 입장권을 사용할 경우나 협의 없이 공연(행사)명 또는 작품명을 변경한 경우
8. 기존 공연·전시 또는 이전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관 시 수준 미달의 공연(행사)·전시 운영으로 민원이 야기된 경우
9. 서귀포예술의전당에 신청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납이 있는 경우
10. 대관자가 공연장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이전 1개

월 이내 대관을 취소하거나 공연 일정을 2회 이상 변경한 경우

11. 그 외 공연(행사)·전시 대관 신청에 대하여 서귀포예술의전당의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큰 경우

제8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자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수리, 교체, 원상복구 비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관기간 중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서귀포예술의전당이 입는 손해 및 제3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 등의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다.

③ 사용자는 대관 기간 중 시설 사용에 있어 귀중품의 관리 및 안전문제에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귀중품의 분실 및 도난이 발생할 경우 대관자의 책임으로 하며, 어떠한 배상도 서귀포예술의전당에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대관허가를 받은 후 서귀포예술의전당이 정하는 공연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서귀포예술의전당 사용자준수사항(별지 1)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공연장 및 전시실 등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공연과 관련이 없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 할 수 없으며, 시설 및 설비, 부대시설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 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용자는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한다.

제10조(규정의 효력) 이 규정은 서귀포예술의전당과 사용자 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제11조(규정의 해석)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결정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종전의 「서귀포예술의전당 시설 대관 운영 규정」(서귀포예술의전당-2129호, 2020. 3. 3.)은 폐지한다.

(별지1)

서귀포예술의전당 사용자 준수사항

1. 입장권(초대권포함)은 공연 횟수별로 관람객의 층·열·좌석번호를 기재하여 소정의 검인신청서에 의거 판매 전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입장권 수표는 사용자와 서귀포예술의전당측이 공동으로 수표 해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입장권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3. 공연·전시 및 행사에 따른 대·소도구 사용은 필히 사전에 담당부서 협의 후 사용하고, 사용 후 원상복구 해야 하며, 사용한 시설에 대하여 정리 정돈 및 청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 공연장 무대 내의 인화성 물질의 소품 반입과 사용은 금합니다.
4. 대관 사용료는 납기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5. 공연 연습을 위한 대관 사용은 무대장치 및 준비 등의 포함된 시간이므로 허가된 시간만을 사용하여야하며, 공연장 사용은 사용 48시간 전에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6. 공연장 사용자는 공연장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안내원 등을 배치해야 하며, 공연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전시실 사용단체(개인)는 전시작품 게시·시설 사용 등을 위하여 48시간 전에 전시실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안내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8. 공연·전시를 위하여 게시한 현수막·포스터 등 광고물과 화환, 화분 등은 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단, 시내 게시용 포스터와 현수막은 관할 행정시의 허가를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합니다.
9.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연장·전시실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귀포예술의전당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